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5
----------	-----

2017. 9. 11(월)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연철흙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17년 8월 21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 라. 상정일자 : 2017년 9월 4일
 -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연철흙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 (안 제4조)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안 제6조)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16조에서 최소한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모바일 정보기술(태블릿PC 등) 교육이나 기기 지원 내용을 법률에 앞서 선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 이 조례안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기관 지원, 정보격차 해소 지원, 위탁, 홍보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격차 해소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5조), 정보화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및 소외계층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위한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안 제7조) 계층 간 정보화 수준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모바일 융합 정보기술 분야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가. 수정사유 : 부칙 누락

나. 주요내용 : 부칙 추가 (조례 공포일 기재)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 675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8월 21일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5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의자 : 연철흙,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이언구, 장선배,
이숙애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안 제4조)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안 제6조)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보화기본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정보통신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라. 입법예고 : 2017. 8. 10 ~ 8. 20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도지사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10조 <신 설>	제1조~제10조 (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 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정보화교육(장애인, 고령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사랑의 그린PC 보급

3. 관련조문

- 안 제6조~제7조 교육기관지원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정보화교육(장애인, 고령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사랑의 그린PC 보급

나. 추계의 전제: 수시

다. 추계결과 : ‘17년도부터 향후 5년간 1,800,000천원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도비 50%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도)	2차년도 (2018년도)	3차년도 (2019년도)	4차년도 (2020년도)	5차년도 (2021년도)
세 출	1,80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6. 작성자 : 연철흙 의원